

# 2019년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2. 28.(목요일)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01건(안전번호 제2019-1010호~1222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영화 불법복제물을 첨부파일로 제공한 네이버 밴드 게시물 3개는 심의일 현재 삭제되어 있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견 없으며,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 이견 없음
- C 위원 : 같은 의견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견 없음을 확인하며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010호~1222

호로 모두 1,101건임

안전번호 제2019-1010호~1015호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네이버 밴드에 영화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밴드는 중식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고 별도의 회원자격 요건은 없으나, 운영진이 적극적으로 밴드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은 퇴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19-1016호~1018호는 일반인이 실명으로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밴드에 영화·방송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면서)천안, 아산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밴드에 가입할 수 있고 별도의 회원자격 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함

- A 위원 : 네이버 밴드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집행 방법을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네이버 밴드 내 불법복제물을 보여주면서)불법복제물 파일을 첨부한 게시물의 URL이 특정되기 때문에 게시물 단위로 시정권고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면 해당 영화의 mp4 파일 외에 영화 포스터, 줄거리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웹하드는 불법복제물 필터링 기술이 도입되어 있는데 네이버 밴드는 필터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밴드에도 웹하드와 마찬가지로 필터링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 생각함

- C 위원 : 시정권고 집행 이후 해당 네이버 밴드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시정권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019호~1088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에는 최신 방송물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가 설정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과 링크로 연결되는 불법복제물을 보여주면서)해당 게시물의 직접링크를 클릭하면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어 전체분량의 최신 방송물을 이용할 수 있음
- B 위원 : 심의안전 게시물들의 게시자가 동일인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링크 설정 게시물 안전 표를 보여주면서)게시자는 동일인임
- B 위원 : 게시자가 해당 밴드 운영진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표시된 게시자 아이디를 보여주면서)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디 옆에 왕관표시가 되어 있어 운영자임을 알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1089호~1097호는 돈을 받고 제공하는 네이버 블로그 내 불법복제물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보호원 직원은 2,000원을 게시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후 게시자와 '서로이웃'이 되었고, 해당 블로그에서 약 4,000개의 불법복제물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해당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010호~1018호는 민원인의 신고가 있었고, 해당 밴드의 운영을 방치할 경우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보이므로 가결 의견이고, 안건번호 제2019-1019호~1088호는 밴드 운영진이 게시물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 의견이고, 돈을 받고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블로그의 경우 가결 의견이되 시정권고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C 위원 : 돈을 받고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블로그는 영리목적으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한데, 시정권고 외의 다른 조치 방법에 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민원인에게 시정권고 제도 안내와 별도로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해 안내하였음
- A 위원 :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사요청 검토도 할 수 있음
- C 위원 : 해당 건은 특별사법경찰 수사요청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A 위원 : 밴드의 경우 소규모의 경우라도 불법복제물 제공이 적발되면 회원 수에 관계없이 시정권고를 할 필요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안전번호 제2019-1010호~1018호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보호원은 개방적 성격의 온라인서비스와 달리 폐쇄적 성격이 강한 SNS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다만 불법 복제물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경우 또는 밴드 명칭에서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B 위원 : 보호원의 네이버 밴드 모니터링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과 해당 웹하드 사이트를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1098호~1222호는 저작물을 그대로 무단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해당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시정권고 함이 타당함
- A 위원 : 이견 없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제2019-1010호~1018호는 네이버 밴드에 다수의 영화 mp4 파일을 첨부파일 형태로 게시한 것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을 권고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다만 안건번호 제2019-1016호~1018호는 게시물이 현재 삭제되어 있어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권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19-1019호~1088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네이버 밴드 게시물로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가결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2019-1089호~1097호는 게시자에게 돈을 지급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 내 불법복제물로 해당 블로그는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가결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나머지 심의 안건들은 웹하드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10호~1222호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 하되, 심의일 현재 삭제되어 있는 제2019-1016호~1018호 게시물들에 대하여는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기로 의결함”

### 3.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3. 7.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